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4대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원가에 반영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3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도급공사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4대 보험료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고 영업정지 처분대상 사망 재해기준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앞서 건설공사 실적 허위보고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건설공사 계획 · 관리 · 조정범위 명시를 통한 일괄하도급 남발 방지책 등의 부실업체 근절책들은 7월부터 시행된다.

직접시공제 도입 및 4대 보험료 공사원가에 반영

30억원 미만 건설공사 수주업체에 대해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직접시공 의무조항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로 설정되었다.

또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조항의 시행일도 내년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건설업체가 첫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 및 하도급대금 보증료가 명시되어 공사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내년 중 시행될 또 다른 주요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장재해기준 개정안이다.

그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 2명 이상이 재해로 사망한 현장으로 강화되었다.

이외 입법예고 당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던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가능 복합공사 확대(1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조항도 내년에 시행되고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의무하도급 제도는 오는 2008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허위실적 업체 제재 7월부터 적용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요 조항으로는 무분별한 일괄하도급 남발을 막기 위한 예외적 허용범위 명확화(건설공사의 계획 · 관리 · 조정을 위한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대책 수립 및 조직체계 구비 등)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7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이루어진다.

또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을 허위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곧바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건설현장 단속 공무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 건설업 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업무 및 권한의 위임(건교부 장관 → 시도지사) 등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반면 당초 입법 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가운데 「2만5천㎡ 이상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의무」 연장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연장불가 통보에 따라 삭제됨으로써 일몰제가 적용되어 내년부터 자동 폐지된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등 4개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일반건설업자의 겸업허용안도 올해 말 포괄적 영겸업 허용안을 일괄 결정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개정안에서 일단 삭제되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무하도급 부문 근거조항을 담은 27조 삭제안, 직접시공제 관련 조항만이 시행시기가 다를 뿐 나머지 조항들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의무하도급제와 연관된 시행규칙 내 규정들은 2008년부터 삭제되고 직접시공 공종 및 하도급 공종의 분리내용을 담은 직접시공계획서의 30일 이내 발주자 제출 의무와 위반시 도급계약 해지 및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하도급부분 금액 82% 미만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 시행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조항은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외 하도급대금 지불요건 완화를 현행 낙찰률 88% 미만 공사로 완화하는 방안과 건설업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명시조항, 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및 보고 의무화 조항 등도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건설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가하도급심사 사전승인 추진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8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 · 하도급 건설업체간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 하도급 건설업체간 상생 발전 방안 주요내용

■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 구축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해 하도급자가 기존의 현장기술인 배치 · 하수급인 현황 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기성금 지급 · 설계변경 현황 등 하도급정보를 입력하고 발주자 및 원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주자는 하도급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 · 관리하고 원도급업체 신고내용과 비교해 불공정계약을 확인한다. 하도급자의 하도급 내용 미통보(과태료), 허위통보(영업정지)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도 담보하도록 한다.

■ 저가하도급 심사강화

저가하도급 심사와 관련해 공공발주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천성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공공발주자가 저가하도급을 철저히 심사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발주기관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한다.

발주자의 저가하도급 계약변경 요구에 불응하면 시정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한다.

이와 함께 저가하도급 심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자 교체가 곤란한 문제를 개선, 장기적으로 저가하도급 공사에 대해 현재 통보제에서 사전승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설계변경시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명확화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원도급자가 공사비를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하도록 한다. 공공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해 원도급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하도급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정착 추진

원도급자의 하도급 미통보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과태료 150만원 → 250만원)해 원도급자의 통보를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대한 공공발주자의 관심을 제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영업정지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한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고 활성화

공공공사에 도입하기 위해 일반 · 전문간 겸업허용업종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향후 일반 · 전문간 업역통합이 이루어진 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보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을 개선해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 공정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청탁, 연고주의 해소를 위해 하도급자 공개모집에 대해 우대하는 한편 하도급업체와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한다.